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매뉴얼

– 금융 및 보험업 –

2008



한국산업안전공단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매뉴얼

– 금융 및 보험업 –

2008



한국산업안전공단

목 차

I. 서 론	1
II. 금융및보험업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개선	2
1. 업종 분포 및 근골격계질환 현황	2
2. 대표 작업유형 및 유해요인	4
3. 작업분석 결과 및 개선의견	6
III. 예방관리프로그램 개요	11
1. 목적	11
2. 용어정의	11
3. 예방관리 프로그램 적용 대상	12
4. 기본 구성 요소 및 원칙	12
IV. 조직구성 및 추진체계	15
1. 조직구성	15
2. 역할 분담	15
3. 예방관리프로그램 추진팀 구성	16
V. 교육 훈련	17
1.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교육	17
2. 예방관리프로그램 추진팀 교육	17
3. 교육 내용 및 지침	18
VI. 유해요인 조사 및 관리	20
1. 유해요인 조사	20
2. 유해요인 개선 방법	23
3. 개선계획서 작성 및 시행	23
4. 신규설비 도입 시 유의사항	24

VII. 의학적 관리	25
1. 증상호소자 관리.....	25
2. 질환자 관리	27
3. 건강증진활동 프로그램	28
VIII. 예방관리 프로그램 평가	29
1. 평가 체계.....	29
2. 평가결과 공지 및 조치사항	29
IX. 문서 기록 및 보존	30
1. 담당자	30
2. 보존대상	30
3. 보존기간	30
4. 문서비밀	30

부 록

1.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노동부 고시 제2003-24호)	32
2. 유해요인 체크리스트	33

I. 서 론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업무상 질병 중 가장 흔한 질병으로 매년 수천명이 근골격계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산업재해보상액도 해마다 천억 이상이 지급되고 있다. 사업주는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유해요인조사)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설비, 작업공정, 작업량, 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을 조사하고 작업시간, 작업자세, 작업방법 등 작업조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 및 증상 유무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근골격계질환자 3,746명
- 업무상질병의 43.6%
(2000년~2007년간 평균)

▶ 근골격계질환의 정의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근골격계에 나타나는 건강장애

근골격계는

- 근육, 건
 - 신경
 - 혈관
 - 관절, 척추디스크
 - 연골
 - 인대 등
- 을 포함한다.

조사된 문제점에 대해 단편적인 시설개선만으로는 근골격계질환 예방의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따라서, 경영자의 의지, 노사의 공동참여, 예방관리추진팀의 구성, 예방교육,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 평가 등이 각각의 구성 요소로 포함된 종합적인 계획인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이 수립 ·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매뉴얼은 금융및보험업에서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역할, 교육 및 훈련,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질환자의 조치 등 예방관리 프로그램 실행 및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 금융및보험업에서의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고자 한다.

* : [부록 1] 참조

II. 금융및보험업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개선

④ 1. 업종분포 및 근골격계질환 현황

가. 업종 분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분류상 금융및보험업은 다시 금융업, 보험및연금업,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으로 소분류된다.

표 II.1 규모별 현황(2007년 12월)

구 분	계	5인 미만	5인~49인	50인~299인	300인~999인	1,000인 이상
사업장수(개소)	27,742	9,992	16,953	778	59	30
사업장 점유율(%)	100	35.77	61.11	2.80	0.21	0.11
근로자수(명)	403,901	16,842	246,026	65,884	29,079	46,070
근로자 점유율(%)	100	4.17	60.91	16.31	7.20	11.41

금융및보험업은 총 27,742개소의 사업장에서 403,901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고, 이중 5인~49인이 16,953개소(61.11%), 5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이 9,992개소(35.77%)로, 5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근로자수는 5인~49인 규모사업장에서 246,026명(60.91%)이 종사하고 있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표 II.2 지역별 현황(2007년 12월)

구 분	계	서울 경인	강원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대전 충남	광주 전남	전북	충북	제주	분류 불능
사업장수(개소)	27,742	12,383	880	2,902	4,610	1,903	1,983	1,095	800	429	757
사업장 점유율(%)	100	44.6	3.2	10.5	16.6	6.9	7.1	3.9	2.9	1.5	2.7
근로자수(명)	403,901	223,239	10,778	34,489	56,231	22,116	21,283	12,182	10,743	4,869	7,971
근로자 점유율(%)	100	55.3	2.7	8.5	13.9	5.5	5.3	3.0	2.7	1.2	2.0

지역별로는 서울/경인지역이 12,383개소(44.6%)로 금융및보험업 사업장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부산/울산/경남지역이 4,610개소(16.6%)로 그 다음을 차지

했다. 근로자는 서울/경인지역이 223,239명(55.3%)으로 가장 많이 종사하였고, 부산/울산/경남지역이 56,231명(13.9%)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나. 근골격계질환 현황

금융및보험업의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근골격계질환 발생 현황을 그림 II.1에 나타냈다. 근골격계질환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다가, 다시 2006년도에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7년에는 40명이 발생하였다.



그림 II.1 근골격계질환 발생 현황(2000년~2007년)

금융및보험업에서의 근골격계질환은 주로 다음과 같은 특성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규모	16인~29인 사업장	근속 기간	10년~20년 미만
연령	35세~39세	재해월	10월
재해요일	목요일	재해시간	오전 10시~12시경

* 2005년에서 2007년 사이 발생된 근골격계질환자 기준임.

④ 2. 대표 작업유형 및 유해요인

본 매뉴얼에서는 8개 금융및보험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표적인 작업유형과 해당 작업별 유해요인을 조사하여 제시한다.

조사 대상 사업장의 주요 작업유형은 창구(일반), 창구(상담), 일반사무직, 콜센터로 구분할 수 있다.

주요 작업에서의 유해요인으로는 불편한 자세, 반복성, 정적자세, 접촉스트레스 등이며, 유해요인과 해당 신체부위에 대한 상호 관련성을 아주강함/강함/있음으로 구분하여 매트릭스로 나타냈다.

※ 조사된 8개의 사업장이 전체 금융및보험업을 대표할 수는 없음.

표 II.3 금융및보험업 작업 유형별 유해요인과 원인

업종	직종	작업유형	유해요인	유해요인의 원인
금융 및 보험업	금융업	창구 (일반)	불편한 자세	책상 및 컴퓨터의 위치 또는 구조로 인한 불편한 자세 유발
			정적자세	작업시 정적자세 발생
			접촉스트레스	책상모서리 및 키보드, 마우스 사용시 접촉 스트레스 발생
			반복성	키보드, 마우스 사용시 높은 반복 작업 발생
	금융업	창구 (상담)	불편한 자세	책상 및 컴퓨터의 위치 또는 구조로 인한 불편한 자세 유발
			정적자세	작업시 정적자세 발생
			접촉스트레스	책상모서리 및 키보드, 마우스 사용시 접촉 스트레스 발생
			반복성	키보드, 마우스 사용시 높은 반복 작업 발생
	보험업	일반사무직	불편한 자세	책상 및 컴퓨터의 위치 또는 구조로 인한 불편한 자세 유발
			정적자세	작업시 정적자세 발생
			접촉 스트레스	책상모서리 및 키보드, 마우스 사용시 접촉 스트레스 발생
		콜센터	불편한 자세	책상 및 컴퓨터의 위치 또는 구조로 인한 불편한 자세 유발
		콜센터	정적자세	작업시 정적자세 발생
		콜센터	접촉스트레스	책상모서리 및 키보드, 마우스 사용시 접촉 스트레스 발생
		콜센터	반복성	키보드, 마우스 사용시 높은 반복 작업 발생

표 II.4 금융및보험업 작업 유형별 유해요인 Matrix

업종	직종	직종별 주요 작업 내용	유해요인			
			불편한 자세	반복성	정직자세	접촉 스트레스
금융 및 보험업	금융업	창구 (일반)	(1) 목 ⁺⁺⁺ (3) 손목/손 ⁺⁺⁺ (4) 허리 ⁺⁺⁺ (5) 무릎 ⁺⁺	(3) 손목/손 ⁺⁺⁺ (4) 허리 ⁺⁺⁺ (5) 무릎 ⁺⁺	(1) 목 ⁺⁺⁺ (4) 허리 ⁺⁺⁺	(3) 손목/손 ⁺⁺⁺
		창구 (상담)	(1) 목 ⁺⁺⁺ (3) 손목/손 ⁺⁺⁺ (4) 허리 ⁺⁺⁺	(3) 손목/손 ⁺⁺⁺	(1) 목 ⁺⁺⁺ (4) 허리 ⁺⁺⁺	(3) 손목/손 ⁺⁺⁺
	보험업	일반 사무직	(2) 어깨 ⁺⁺⁺ (3) 손목/손 ⁺⁺⁺ (4) 허리 ⁺⁺⁺		(1) 목 ⁺⁺⁺ (4) 허리 ⁺⁺⁺	(3) 손목/손 ⁺⁺⁺
		콜센터	(1) 목 ⁺⁺⁺ (3) 손목/손 ⁺⁺⁺ (4) 허리 ⁺⁺⁺	(3) 손목/손 ⁺⁺⁺	(1) 목 ⁺⁺⁺ (4) 허리 ⁺⁺⁺	(3) 손목/손 ⁺⁺⁺

◆ 유해성 (아주강함 : +++ , 강함 : ++ , 있음 : +)

④ 3. 작업분석 결과 및 개선의견

업종명 금융및보험업

작업명 창구(일반)

◆ 작업내용 및 사진



● 작업내용

- 일반적인 창구 업무로 입출금, 고객응대 등 각종 업무를 수행

◆ 작업분석 평가기법 및 결과

- 주요 유해요인의 종류와 신체부위별 유해수준

◆ 유해성 (아주강함 : ***, 강함 : **, 있음 : *)

불편한 자세	반복성	정적자세	과도한 힘	접촉 스트레스	작업시간	진동
(1) 목***	(3) 손목/손***	(1) 목***		(3) 손목/손***		
(3) 손목/손***	(4) 허리***	(4) 허리***				
(4) 허리***	(5) 무릎***					
(5) 무릎**						

◆ 본 작업 평가시 사용 가능한 평가도구

- 작업자세 : RULA

- 반복성 : JSI

◆ 평가도구의 활용

실제 작업에 대한 RULA 평가 결과 (작업자세)

최종 점수 : 7점으로 즉각적인 작업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작업으로 평가됨.

◆ 주요 유해요인 및 문제점

- 불편한 자세 : 책상 및 컴퓨터의 위치 또는 구조로 인한 불편한 자세 유발
- 반복성 : 키보드, 마우스 작업 시 높은 반복 작업 발생. 고객을 맞이할 때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 발생
- 정적자세 : 작업 시 정적 자세 유발
- 접촉스트레스 : 책상 모서리 및 키보드, 마우스 사용 시 접촉 스트레스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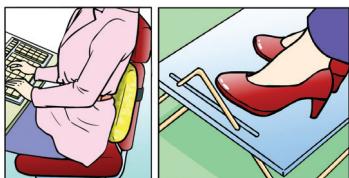
* 주의 : 위 분석은 특정작업을 대상으로 분석된 것으로 전체작업을 대표할 수는 없으며, 작업 상황과 조건에 따라 평가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④ 개선대책/방향



[공학적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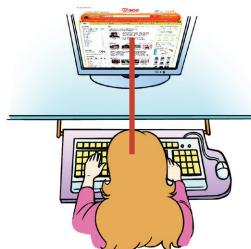
- 서류받침대 및 캐비넷 사용으로 책상 상부의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다리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작업 시 발생되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최소화한다.



- 요추반침대를 사용하여 허리를 곧게 유지하여 앓고, 대퇴후면부위에 지나친 압박을 피하기 위해 발받침대를 사용해 다리를 편안하게 지지하도록 한다.

-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팔뻗침과 허리숙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객과의 응대거리를 가깝게 데스크의 형태를 개선한다. 왼쪽의 그림과 같이 정상작업영역내에서 고객응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최대작업영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관리적 개선방안]



- 목, 어깨, 팔꿈치, 손목, 허리 부위에 자주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오랜시간동안 동일한 자세를 취함으로써 긴장되고 피로가 누적된 근육을 이완시켜준다.

- 작업자 정면에 모니터를 위치시켜 목의 비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업종명 금융및보험업

작업명 창구(상담), 콜센터, 일반사무

⌚ 작업내용 및 사진



● 작업내용

- 고객유치, 계좌정보조회, 계좌이체결과, 수수료 관련 문의 등의 상담 업무 수행
- 일반행정 및 사무업무 수행

⌚ 작업분석 평가기법 및 결과

- 주요 유해요인의 종류와 신체부위별 유해수준

◆ 유해성 (아주강함 : ***, 강함 : **, 있음 : *)

불편한 자세	반복성	정적자세	과도한 힘	접촉 스트레스	작업시간	진동
(1) 목***	(3) 손목/손***	(1) 목***		(3) 손목/손***		
(2) 어깨***		(4) 허리***				
(3) 손목/손***						
(4) 허리***						

⌚ 본 작업 평가시 사용 가능한 평가도구

- 작업자세 : RULA

- 반복성 : JSI

⌚ 평가도구의 활용

실제 작업에 대한 RULA 평가 결과 (작업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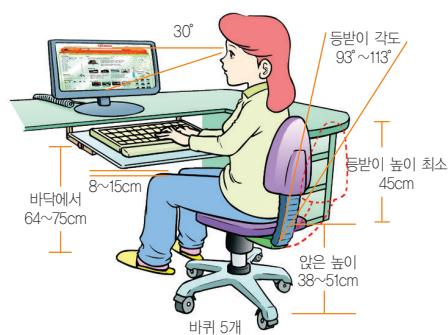
최종 점수 : 5점으로 빠른 작업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작업으로 평가됨.

⌚ 주요 유해요인 및 문제점

- 불편한 자세 : 책상 및 컴퓨터의 위치 또는 구조로 인한 불편한 자세 유발
- 반복성 : 키보드, 마우스 작업 시 높은 반복 작업 발생
- 정적자세 : 작업 시 정적 자세 유발
- 접촉스트레스 : 책상 모서리 및 키보드, 마우스 사용 시 접촉 스트레스 발생

* 주의 : 위 분석은 특정작업을 대상으로 분석된 것으로 전체작업을 대표할 수는 없으며, 작업 상황과 조건에 따라 평가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④ 개선대책/방향



[공학적 개선방안]

- 컴퓨터 작업장 설계는 원쪽의 그림을 참조하여 목, 허리, 팔꿈치, 손목, 무릎 자세가 자연스럽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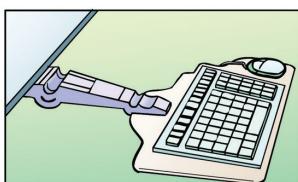
✗ 손목꺽임



○ 곧게 편 손목



- 손목이 과도하게 꺾이지 않도록 키보드의 경사를 조정하고, 부드러운 재질의 손목받침대를 사용하여 손목의 수평유지 및 접촉스트레스를 제거한다.



- 키보드와 마우스가 함께(같은 높이) 위치할 수 있을 만큼의 너비를 가진 키보드 트레이를 사용하고, 작업자의 신체 조건에 따라 기울기, 높이 등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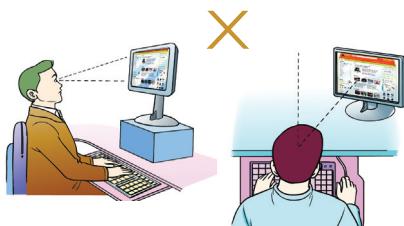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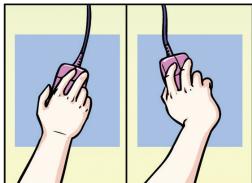
- 요추받침대를 사용하여 허리를 곧게 유지하여 앓고, 대퇴후면부위에 지나친 압박을 피하기 위해 발받침대를 사용해 다리를 편안하게 지지하도록 한다.



- 수화기를 목과 어깨사이에 끼운 채 통화를 하면서 동시에 타이핑 작업을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해드셋을 활용한다.

④ 개선대책/방향

O X



[관리적 개선방안]

- 마우스는 키보드에 가급적 가깝게 유지하면서 손목을 곧게 유지한다. 마우스를 움직일 때는 전체 팔을 사용하도록 하며, 손바닥 전체로 마우스를 잡도록 한다.



-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팔뻗침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정상작업영역에 위치하고, 가끔 사용하는 물건은 최대작업영역에 두도록 한다.

- 부적절한 모니터(또는 문서) 배치때문에 목이 뒤로 젖혀지거나(또는 앞으로) 비틀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모니터를 몸의 중앙에 두고, 수평시선(스크린의 맨 꼭대기를 바라봄)에서 아래로 약30도 범위에 모니터 높이를 조절한다. 또한, 모니터와의 거리는 팔을 펴쳤을 때 손끝에 닿을 정도로 두면 적당하다.

- 목, 어깨, 팔꿈치, 손목, 허리 부위에 대해 자주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근육이 오랜시간 동일한 자세를 취함으로써 긴장되고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한다.

- 고객의 상담이 없거나 여유시간이 있을 때 짧고 잦은 스트레칭 및 간단한 운동을 실시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한다.

III. 예방관리프로그램 개요

④ 1. 목적

본 운영매뉴얼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제정한 「사업장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KOSHA Code H-31-2003)」과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지침 (KOSHA Code H-30-2003)」에 근거하여 금융및보험업에 대한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④ 2. 용어정의

본 운영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표Ⅲ.1과 같다.

표Ⅲ.1 용어의 정의

용 어	정 의
관리감독자	사업장내 단위 부서의 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노사협의회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근골격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반복성, 부자연스러운 또는 취하기 어려운 자세, 과도한 힘, 접촉스트레스, 진동 등
유해요인 조사자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부서의 유해요인조사를 수행하는 자로서 보건관리자, 예방관리프로그램 추진팀, 관련업무의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주가 지정하는 자 또는 외부전문기관(외부전문가)
보건관리자/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의 보건관리자/안전관리자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 사업장에서 대내외적으로 산업안전보건 관계업무를 맡고 있는 자
산업보건의	의료법에 의한 의사로서 산업의학전문의, 예방의학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보건의료전문가	산업보건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 간호사 등

기타 본 운영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보건규칙 및 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3. 예방관리 프로그램 적용 대상

가. 법적 적용

- (1) 근골격계질환자가 연간 10인 이상인 사업장
- (2) 근골격계질환자 5인 이상으로 근로자수의 10% 이상인 사업장
- (3) 근골격계질환자 발생과 관련 노사간 이견으로 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령한 사업장

나. 자율적 적용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의 자율적 시행

④ 4. 기본 구성 요소 및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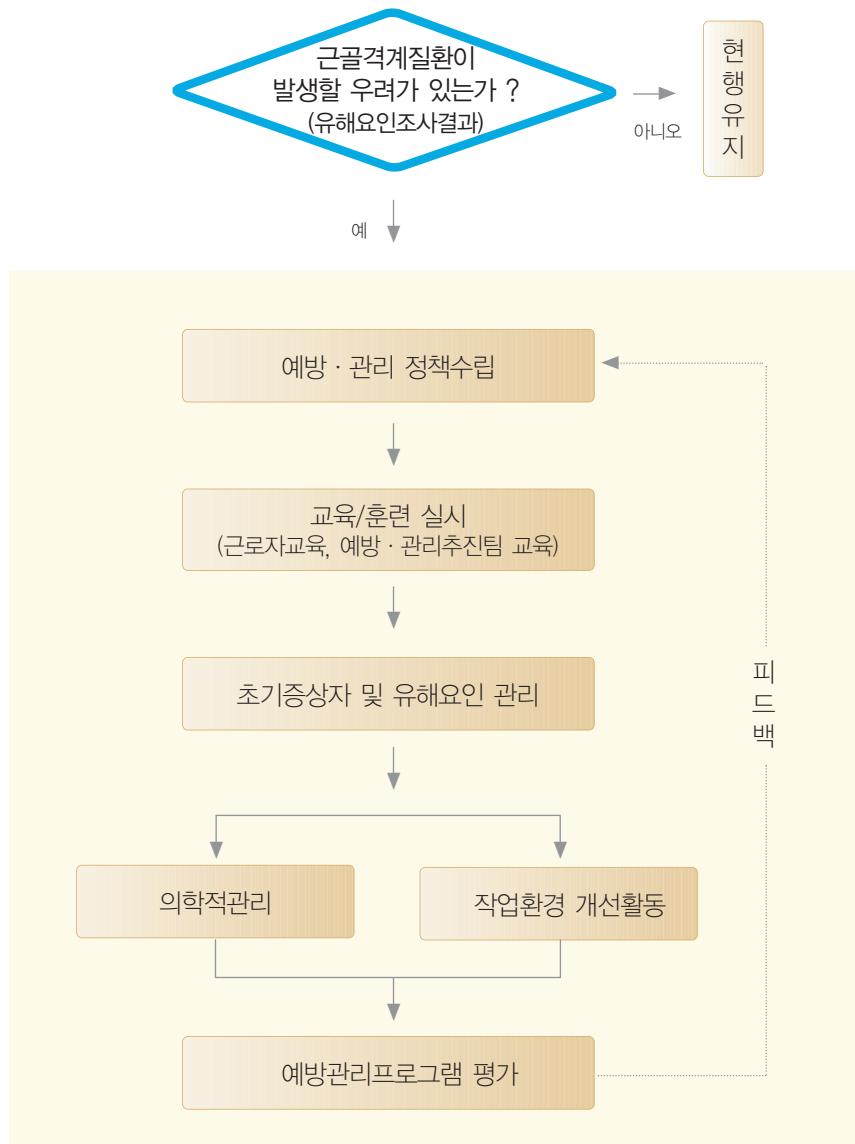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은 다음의 6개 부문으로 구성된다.(그림Ⅲ.1)

- (1) 조직구성
- (2) 교육훈련
- (3) 유해요인 관리
- (4) 의학적 관리
- (5) 프로그램 평가
- (6) 문서 기록과 보존

조직구성	교육훈련	유해요인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방관리프로그램 추진팀● 역할 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대상● 교육 내용 및 시간● 교육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해요인 조사● 유해요인 개선방법● 개선계획서 작성/시행
의학적 관리	프로그램 평가	문서 기록과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상 호소자 관리● 질환자 관리● 건강증진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 시기● 평가 지표● 프로그램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존 대상 문서● 보존기간

그림Ⅲ.1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구성 요소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은 그림Ⅲ.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은 순서로 진행 된다.



그림Ⅲ.2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흐름도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추진 시 아래와 같은 원칙에 기초한다.

(1) 전사적 참여

사업주와 근로자는 근골격계질환이 단편적인 작업환경개선만으로는 예방하기 어렵고 전 직원의 지속적인 참여와 예방활동을 통하여 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추진 체계를 구축한다.

(2) 분석적 문제 해결

사업주와 근로자는 근골격계질환 발병의 직접원인(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 반복성, 과도한 힘의 사용 등), 기초요인(체력, 숙련도 등) 및 촉진요인(업무량, 업무 시간, 업무스트레스 등)을 제거하거나 관리하여 건강장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 한다.

(3) 초기관리와 사전조치

사업주와 근로자는 근골격계질환 위험에 대한 초기관리가 늦어지게 되면 영구적인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치료 등 관리비용이 더 커짐을 인식한다.

(4) 의학적 관리 체계 구축

사업주와 근로자는 근골격계질환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 및 조속한 직장 복귀를 위하여 되도록이면 사업장 내에서 재활프로그램 등의 의학적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IV. 조직 구성 및 추진 체계

④ 1. 조직구성

사업주, 근로자, 보건관리자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예방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④ 2. 역할 분담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사업주, 근로자, 보건관리자의 역할은 표IV.1과 같다.

표IV.1 역할 분담

구 성	정 의
사 업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정책을 수립하여 근로자에게 주지· 근골격계질환의 증상, 유해요인 보고 및 대응체계를 구축· 예방관리 프로그램의 관리 ·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 예방관리 프로그램 추진팀에게 예방관리 프로그램의 운영 의무를 명시· 예방관리 프로그램 추진팀에게 운영에 필요한 사내지원을 제공· 근로자에게 예방관리프로그램의 개발, 수행, 평가에 참여 기회를 부여
근 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골격계질환의 증상 및 질병발생, 유해요인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예방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 · 준수· 예방관리 프로그램의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
보건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기적으로 작업장을 순회하여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하는 작업공정 및 작업유해요인을 파악· 주기적인 근로자 면담 등을 통하여 근골격계질환 증상호소자를 조기에 발견· 3일 이상 지속되는 증상호소 근로자가 있을 경우 지속적인 관찰, 전문의 진단의뢰 등의 필요한 조치· 근골격계질환자를 주기적으로 면담하여 가능한 한 조기에 작업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협조· 예방관리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정책 결정에 참여

④ 3. 예방관리 프로그램 추진팀 구성

가. 구성 원칙

사업주는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근골격계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사업장 특성에 맞게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추진팀을 구성한다.

- (1) 사업장의 업종, 규모 등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적정인력이 참여하도록 구성 한다.
- (2) 예산 등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는 자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한다.
- (3) 대규모 사업장은 부서별로 예방관리 프로그램 추진팀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자는 해당 부서의 예산결정권자, 부서장으로 할 수 있다.
-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구성된 사업장은 예방관리 프로그램 추진팀의 업무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나. 추진팀의 역할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사업장 근골격계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한 예방관리 프로그램 추진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1) 예방관리 프로그램의 계획수립 및 수정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 (2) 예방관리 프로그램의 실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 (3)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실행한다.
- (4) 유해요인 평가 및 개선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실행한다.
- (5) 근골격계질환자에 대한 사후조치 및 근로자 건강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하고 실행한다.

V. 교육 훈련

④ 1.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교육

가. 교육 내용 및 시간

- (1) 모든 근로자와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기본교육을 '교육내용 및 지침'을 참고하여 실시한다.
- (2) 교육시간은 교육대상자가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이해하고, 예방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 동안 실시한다.

나. 강사 및 교육 위임

교육은 근골격계질환 전문교육을 이수한 예방관리프로그램 추진팀의 팀원이 실시하며 필요 시 관계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④ 2. 예방관리프로그램 추진팀 교육

가. 교육 내용 및 시간

- (1) 예방관리프로그램 추진팀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교육내용 및 지침'을 참고하여 실시한다.
- (2) 교육시간은 교육내용을 습득하여 근로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 동안 실시한다.

나. 강사 및 교육 위임

전문교육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련 전문과정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3. 교육 내용 및 지침

가. 교육 내용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과 관련하여 교육대상별 교육 내용은 표 V.1과 같다.

표 V.1 교육대상별 교육 내용

구 성	교육대상		
	근로자	관리감독자	추진팀
1. 근골격계질환이란 무엇인가?			
근골격계질환의 정의 및 개요	○	○	○
근골격계질환 실태 및 통계 자료	○	○	○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대처 방법	○	○	○
근골격계질환의 증상과 징후 식별 방법	○	○	○
2.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예방관리 프로그램의 구성 및 수립	○	○	○
예방관리 프로그램의 실행 및 평가	○	○	○
예방관리 프로그램의 효과	○	○	○
3. 근골격계부담작업 및 유해요인 조사			
근골격계부담작업 및 유해요인	○	○	○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작성 및 분석		○	○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작성 및 분석	○	○	○
인간공학적 작업장 진단 기법			○
4. 인간공학적 작업장 개선			
인간공학의 개요	○	○	○
작업장 개선원리		○	○
작업 개선 절차		○	○
작업장 개선 사례 및 실습		○	○
5. 근골격계질환 예방활동			
증상과 징후 조기보고의 중요성	○	○	○
직장체조 및 스트레칭	○	○	○
장비 및 설비의 올바른 사용방법	○	○	○

나. 교육 지침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과 관련하여 교육 단계별 지침은 표 V.2와 같다.

표 V.2 단계별 지침

단계	지침	체크
준비	피교육자들의 관련 지식 수준을 파악하라.	<input type="checkbox"/>
	교육 초기에 교육 내용 전반에 대한 그림 또는 목표를 제시하라.	<input type="checkbox"/>
	사례를 이용하여 교육 내용의 이해도를 높인다.	<input type="checkbox"/>
	전문용어는 가능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한다.	<input type="checkbox"/>
진행	적절한 체험 또는 실습을 통해서 교육의 이해도를 높여라.	<input type="checkbox"/>
	팀을 구성하여 교육함으로써 피교육자간에 상호보완이 가능하게 한다.	<input type="checkbox"/>
	명료한 어조로 교육함으로써 이해도를 높인다.	<input type="checkbox"/>
	공감이 가는 내용으로 호기심을 자극하여 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	<input type="checkbox"/>
평가	적절한 질문을 통해 교육 내용의 이해도를 점검하여 진행 한다.	<input type="checkbox"/>
	피교육자로부터 추가로 필요한 교육 내용을 피드백 (feedback)을 받아서 교육에 반영한다.	<input type="checkbox"/>
	피교육자로부터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피드백을 받아서 교육에 반영한다.	<input type="checkbox"/>

VI. 유해요인 조사 및 관리

④ 1. 유해요인조사

가. 조사 시기

매 3년 이내에 정기적으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되,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다.

- (1)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한 경우
- (2)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 설비를 도입한 경우
- (3)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나. 조사 대상

유해요인조사는 사업장내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사한 작업형태와 유사한 작업조건의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일부작업에 대해서만 유해요인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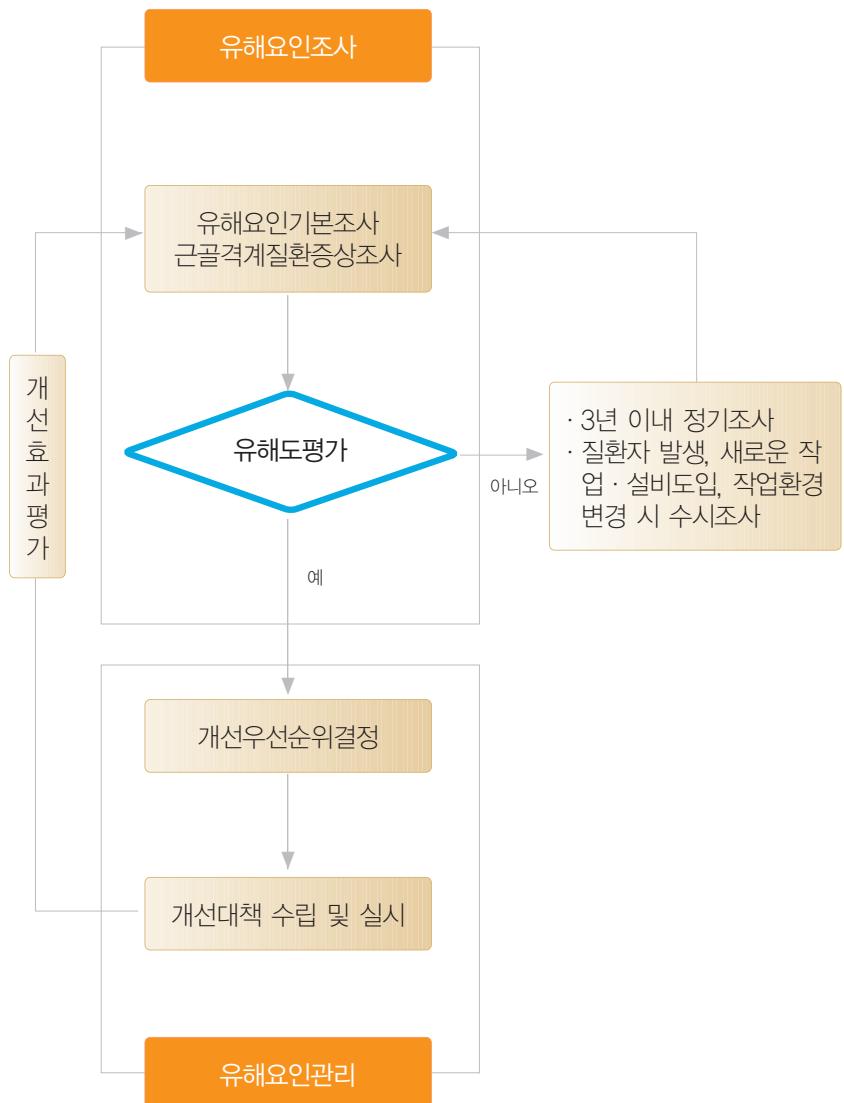
다. 조사자

- (1)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사업장 전체 유해요인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실시 업무를 하도록 한다. 다만,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외에 부서별 유해요인조사자를 정해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2) 사업주는 보건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해요인조사자를 지정하고, 유해요인조사자는 사업장의 유해요인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한다. 다만,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예방 관리프로그램 추진팀에서 수행할 수 있다.
- (3)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자에게 유해요인조사에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예방관리프로그램 추진팀이 유해요인조사를 포함한 교육을 이미 받았을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4) 사업주는 사업장 내부에서 유해요인조사자를 선정하기 곤란한 경우 유해요인조사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라. 조사 내용 및 도구

- (1) 유해요인조사는 그림VI.1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유해요인조사, 유해요인관리, 개선효과 평가의 순서로 진행된다.
- (2) 유해요인기본조사와 근골격계질환증상조사는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지침'(KOSHA CODE H-30-2003)의 유해요인기본 조사표와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를 사용한다.
- (3) 유해요인기본조사와 근골격계질환증상조사결과 추가적인 정밀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지침'(KOSHA CODE H-30-2003)에서 설명된 인간공학적 작업분석/평가도구를 이용한다.



그림VI.1 유해요인조사 흐름도

④ 2. 유해요인 개선 방법

작업관찰을 통해 유해요인을 확인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공학적 개선(engineering control) 또는 관리적 개선(administrative control)을 실시한다.

가. 공학적 개선 방법

공학적 개선은 다음의 재배열, 수정, 재설계, 교체 등을 말한다.

- (1) 사무책상 및 의자
- (2) 업무공간
- (3) 모니터 및 주변기기 등

나. 관리적 개선 방법

관리적 개선은 다음을 말한다.

- (1) 작업의 다양성 제공
- (2) 작업일정 및 작업속도 조절
- (3) 회복시간 제공
- (4) 작업 습관 변화
- (5) 업무공간, 모니터 및 주변기기의 주기적인 정리정돈 및 유지보수
- (6) 작업자 적정배치
- (7) 직장체조 강화

⑤ 3. 개선계획서 작성 및 시행

가. 계획서 작성

- (1) 개선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노동조합 또는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
- (2) 개선계획서에는 공정명, 작업명, 문제점, 개선방향, 추진일정, 개선비용, 해당 근로자 의견 또는 확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개선 우선순위 설정

개선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 (1) 유해도가 높은 작업
- (2) 다수의 근로자가 유해요인에 노출되고 있거나 중상 및 불편을 호소하는 작업
- (3) 비용편익효과가 큰 작업

다. 계획서 시행

- (1) 수립된 개선계획서가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그 사유, 향후 추진방안, 추진일정 등을 근로자에게 알린다.
- (2) 문제되는 작업 중 개선이 불가능하거나 개선효과가 없어 유해요인이 계속 존재하는 경우에는 유해요인 노출시간 단축, 작업 시간 내 교대 근무실시, 작업순환 등으로 작업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

라. 개선 효과 평가

개선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가 참여하는 다음 사항의 평가를 실시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보완한다.

- (1) 유해요인 노출 특성의 변화
- (2) 근로자의 중상 및 질환 발생 특성의 변화(특정기간의 빈도, 질환의 발생률, 강도율, 증상호소율, 건강관리실 이용 횟수 등)
- (3) 근로자의 만족도

④ 4. 신규시설 도입 시 유의사항

사업주는 새로운 시설, 사무기기 등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인체특성과 유해요인 특성 등 인간공학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VII. 의학적 관리

의학적 관리는 그림VII.1에서 정하는 바와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그림VII.1 의학적 관리의 업무 흐름도

④ 1. 증상호소자 관리

가. 조기 발견 체계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증상과 징후를 보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1) 근로자의 보고를 접수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2) 근골격계질환 증상의 조기 발견과 조치를 위하여 관련 증상과 징후가 있는 근로자가 이를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
- (3) 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증상 보고를 꺼리게 하거나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기존의 관행이나 조치들을 제거한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증상과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1) 근골격계질환 증상과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담당부서와 조사주기를 결정해야 한다.
- (2) 근로자와의 면담과 조사를 통하여 근골격계질환이 있는 근로자를 조기에 찾아낸다.
- (3)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나. 후속 조치

사업주는 근골격계질환 증상과 징후를 보고한 근로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치해야 한다.

- (1) 증상과 징후를 보고한 근로자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학적 진단과 치료를 받도록 한다.
- (2) 근골격계질환 증상호소자에 대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그 작업을 제한하거나 부담이 적은 작업으로의 전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3) 증상호소자는 사업주가 시행하는 근골격계부담작업 완화를 위한 작업 제한, 작업전환에 적극 협조하도록 한다.
- (4) 다음과 같은 신속한 해결방법을 확보하여 해당업무를 개선한다.
 - 신속하게 근골격계질환의 증상호소자 관리방법 확보
 - 해당업무의 근로자와 애로사항에 대하여 상담하고 유해요인이 있는지 확인
 - 유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조언 청취

근로자로부터 근골격계질환 증상과 징후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작업관련 여부를 판단하여 조속히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며, 근골격계질환 증상과 징후에 대한 조치결과를 해당 근로자와 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 증상호소자에 대한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 (1) 근골격계질환의 증상호소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위임할 수 있다.

- (2) 위임한 보건의료전문가에게 다음의 정보와 기회를 제공한다.
- 근로자의 업무설명 및 그 업무에 존재하는 유해요인
 - 근로자의 능력에 적합한 업무와 업무제한
 - 사내 근골격계질환의 증상호소자 관리방법
 - 작업장 순회점검
 - 기타 근골격계질환 관리에 필요한 사업장내 정보
- (3) 보건의료전문가는 근골격계질환 관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 근로자의 업무에 존재하는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과 관련된 근로자의 의학적 상태에 관한 견해
 - 임시 업무제한 및 사후관리에 대한 권고 사항
 - 치료를 요하는 근골격계질환자에 대한 검사결과 및 의학적 상태를 근로자에게 통보한 내용
 - 근골격계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비업무적 활동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한 내용

④ 2. 질환자 관리

가. 질환자 조치

사업주는 근골격계질환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 즉시 소견서에 따른 의학적 조치를 한다.

나. 질환자 업무 복귀

- (1) 질환자나 보건의료전문가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질환자의 치료와 회복상태를 파악하여 근로자가 빠른 시일 내에 복귀하도록 한다.
- (2) 업무복귀 전에 근로자와 면담을 실시하여 업무적응을 지원한다.
- (3) 질환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복귀 후 일정기간 동안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 (4) 치료 후 업무복귀 근로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보건상담을 실시하여 그 예후를 관찰하고 질환의 재발방지조치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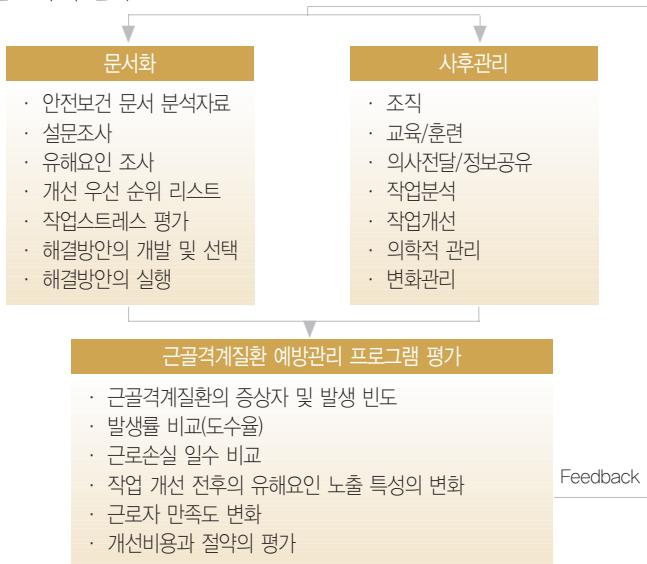
❸ 3. 건강증진활동 프로그램

- (1) 사업주는 직장체조, 근력강화 훈련, 스트레칭 등 건강증진활동을 통해 균골 격계질환에 대한 근로자의 적응능력을 강화시킨다.
- (2) 근로자 면담, 스트레칭 및 근력강화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적응능력 증대 및 복귀를 지원한다.
- (3) 근로자는 사업주가 추진하는 건강증진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VIII. 예방관리 프로그램 평가

▶ 1. 평가 체계

- (1)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예방관리 프로그램 평가에 참여기회를 부여한다.
- (2) 예방관리프로그램 추진팀은 매년 해당 부서 또는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그림VIII.1과 같이 예방관리프로그램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3) 예방관리프로그램 추진팀은 다음의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평가할 수 있다.
 - 유해요인 노출 특성의 변화
 - 근로자의 증상 및 질환 발생 특성의 변화(특정기간의 빈도, 질환의 발생률, 근로손실일수, 강도율, 증상호소율, 건강관리실 이용 회수 등)
 - 근로자의 만족도



그림VIII.1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평가

▶ 2. 평가결과 공지 및 조치사항

- (1) 예방관리프로그램의 평가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지한다.
- (2) 예방관리프로그램 평가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예방관리 프로그램에 이를 보완하여 개선한다.

IX. 문서 기록 및 보존

❶ 1. 담당자

사업주는 문서의 기록과 보존을 위해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를 임명할 수 있다.

❷ 2. 보존 대상

문서 기록과 보존 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록 보존한다.

- (1) 증상 보고서
- (2) 보건의료전문가의 소견서 또는 상담일지
- (3) 근골격계질환자 관리카드
- (4) 사업장 예방관리프로그램 내용
- (5) 유해요인 개선계획서와 개선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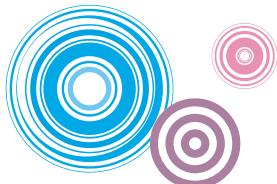
❸ 3. 보존 기간

근로자의 신상에 관한 문서는 5년 동안 보존하며, 시설 · 설비와 관련된 자료는 시설 · 설비가 작업장 내에 존재하는 동안 보존한다.

❹ 4. 문서 비밀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 근로자 신상정보 열람 제한에 대한 내부규정을 수립할 수 있다.

부 록



부록 1.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부록 2. 유해요인 체크리스트



부록 1.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당신의 사업장에는 어떤 작업이 해당될까요? 한번 체크해보세요.”

번호	그림	부담작업 설명	해당 작업명
1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4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5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6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기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7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8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9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1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부록 2 유해요인 체크리스트

항 목	예	아니오
사무작업		
1. 작업자는 불필요하게 팔을 뻗치거나 비트는 일없이 작업하는 모든 범위에 도달하는가?		
2. 책상 높이가 팔꿈치 높이와 같아져 있는가?		
3. 책상 하부의 여유공간이 적절하여 작업자의 하지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가? (하지여유공간)		
4. 책상 하단과 의자 착석면 사이의 여유공간이 적절하여 작업자의 하지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가?(허벅지 여유공간)		
5.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체중이 주로 좌골관절에 실려 있는가?		
6. 의자 착석면의 폭은 큰사람에게 맞도록 하고 깊이는 등이 등받이에 달을 수 있는가?		
7. 등받이의 지지가 적절히 이루어져 있고 등받이 기울기가 조절될 수 있는가?		
8. 발은 바닥에 평행하게 지지할 수 있는가?		
9. 요주반침대가 있는가?		
10. 작업 의자는 안정성을 위해 다리를 다섯 개 갖추어져 있는가?		
11. 모니터의 형태, 높이 및 위치는 적절한가?		
12. 책상위의 작업공간은 적절히 확보되는가?		
작업 자세		
1. 작업자들이 불편한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는가?		
2. 작업자들은 허리나 목이 굽혀지거나 젖혀진 상태로 작업을 수행하는가?		
3. 작업 중 목이 비틀어지거나 허리가 비틀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가?		
4. 작업자들은 동일한 자세로 장시간 작업을 수행하는가?		
5. 작업공간은 일하기에 충분한 크기인가?		
6. 작업이 주로 서서 수행되는가?		
7. 주로 근무하는 작업장소의 높이는 적절한가?		
콜센터		
1. 상담업무시 작업자는 헤드셋 등을 이용하는가?		
정신적 스트레스		
1. 작업이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는가?		
2. 초과근무를 수행하는 빈도가 잦은가?		
3. 동료 또는 타인으로부터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받는가?		
4. 동료 또는 타인에게 자신의 감정을 숨겨야 하는가?		
5. 고용의 안정이 보장되는가?		
업무(작업)환경		
1. 업무(작업)양은 작업자가 감당하기에 적절한가?		
2. 업무시간은 작업자가 일하기에 적절한가?		
3. 작업장은 작업을 하기에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가?		

※ 체크한 항목에 따라 정밀조사, 작업방법 변경 등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기관별 주소

지역본부(지도원, 센터)	주소	전화번호
서울지역본부 보건기술팀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49-6 유한양행빌딩 14~15층	(02)828-1673
서울북부지도원 보건기술팀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1가 10 우리빌딩 7~8층	(02)3783-8343
경기북부지도원 안전보건팀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801-1 경기북부상공회의소 1층	(031)828-1914
강원지도원 안전보건팀	강원도 춘천시 은의동 513 한국교직원공제회관 2층	(033)815-1023
강릉산업안전보건센터	강원도 강릉시 흥제동 1001(강릉시청 15층)	(033)655-1866
경인지역본부 보건기술팀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491	(032)5707-229
부천산업안전보건센터 중소기업지원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내동 54-8 삼진빌딩 2층	(032)6806-510
경기남부지도원 보건기술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06-5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031)259-7136
성남산업안전보건센터 중소기업지원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06-2 소곡회관	(031)785-3321
경기서부지도원 안전보건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29-2	(031)4817-512
반월시화지역산업보건센터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89-6번지 시화공단 3나 503-3 코포모데크노센터 720호, 721호	(031)362-5550
부산지역본부 보건기술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1동 1486-49	(051)5200-583
경남동부산업안전보건센터 중소기업지원팀	경남 양산시 북부동 483-14 그랜드빌딩 6층	(055)371-7562
울산지도원 안전보건팀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615-8	(052)226-0527
경남지도원 보건기술팀	경남 창원시 용호동 7-3	(055)269-0542
대구지역본부 보건기술팀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2가 50-3 호수빌딩19, 20층	(053)609-0546
경북동부지도원 안전보건팀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124-4	(054)271-2043
경북북부지도원 건설보건팀	경북 구미시 임수동 92-30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5층	(054)453-8022
광주지역본부 보건기술팀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89-1 광주무역회관빌딩 8층	(062)949-8733
전북지도원 안전보건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807-8 노동부종합청사 4층	(063)240-8522
전남동부지도원 안전보건팀	전남 여수시 선원동 1285	(061)689-4933
제주지도원 기술지원팀	제주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95 중소기업센터 3층	(064)797-7504
대전지역본부 보건기술팀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449-7	(042)620-5632
충북지도원 안전보건팀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171 KT건물 3층	(043)230-7141
충남지도원 안전보건팀	충남 천안시 불당동 725 미래씨티빌딩 5층	(041)570-3421
본부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산동 34-4	(032)5100-725~729

본 자료는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제작한 것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무단 복사,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배됩니다.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매뉴얼

(금융및보험업)

발 행 일 : 2008년 12월 초판 발행

발 행 인 : 노민기

발 행 처 :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국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산동 34-4

전 화 : (032) 5100-725~729

F A X : (032) 503-6997

인 쇄 : 이문 062-433-9915

〈비매품〉

